

1. 개정이유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및 항목을 제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법적 제출서류 미비점 보완을 통해 행정절차 개선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토록 한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 제출서류 중 계약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여 등록규칙 및 별지서식 항목 삭제(제20조제1항제4호, 별지 제5호서식)
- 나.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7에 따라 항공기의 이중국적 등록을 방지하고 있으며, 신규등록 신청 시 항공기 등록업무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국외에서 수입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신규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에 명시(제20조제1항7호, 별지 제5호서식)
- 다. 항공기 임차권 설정등록 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정 정비인력 보유 현황의 검토 필요성이 확인되어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9호서식)
- 라. 기타 항공기 등록규칙 별지서식의 불필요한 용어 삭제 및 용어

통합 등 서식 일부 개정(별지 제5호·제7호·제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기등록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7. ~ 11. 18.)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안

항공기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외에서 수입되어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7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의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외에서 수입되어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의 “취득가액·최대이륙중량·취득세액 또는 등록면허세·등록의 목적”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가액·최대이륙중량·등록세액”을 삭제하고 구분의 “구소유자(양도인)·구임차인·구임대인”을 “양도인”으로 “신소유자(양수인)·신임차인·신임대인”을 “양수인”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차권 설정등록의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에 따라 운항
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
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신규등록의 신청) ① (생 략) 1. ~ 3.(생 략) 4. <u>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u> 5. ~ 7. (생 략) <u><신 설></u> ② ~ ③ (생 략)	제20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7. <u>국외에서 수입되어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등록을 증명하는 서류</u>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table><tr><td>신청인</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td></tr><tr><td rowspan="3">항공기</td><td>종류·형식</td><td>등록기호 ※ HL</td></tr><tr><td>제작자</td><td>제작번호</td></tr><tr><td>정치장</td><td>제작연월일</td></tr><tr><td>소유자</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국적</td></tr><tr><td>임대인</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국적</td></tr><tr><td>임차인</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국적</td></tr><tr><td colspan="3">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취득가액 취득세액 또는 등록면허세</td></tr><tr><td colspan="3">등록의 목적 최대이륙중량</td></tr><tr><td colspan="3">「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td></tr><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td><td>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td><td>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td></tr><tr><td>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td><td>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td><td>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td></tr></table>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항공기	종류·형식	등록기호 ※ HL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제작연월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대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차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취득가액 취득세액 또는 등록면허세			등록의 목적 최대이륙중량			「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table><tr><td>신청인</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td></tr><tr><td rowspan="3">항공기</td><td>종류·형식</td><td>등록기호 ※ HL</td></tr><tr><td>제작자</td><td>제작번호</td></tr><tr><td>정치장</td><td>제작연월일</td></tr><tr><td>소유자</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국적</td></tr><tr><td>임대인</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국적</td></tr><tr><td>임차인</td><td colspan="2">성명·명칭 주소·국적</td></tr><tr><td colspan="3">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취득가액 취득세액 또는 등록면허세</td></tr><tr><td colspan="3">등록의 목적 최대이륙중량</td></tr><tr><td colspan="3">「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td></tr><tr><td rowspan="2">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td><td>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td><td>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td></tr><tr><td>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td><td>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td><td>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td></tr></table>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항공기	종류·형식	등록기호 ※ HL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제작연월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대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차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취득가액 취득세액 또는 등록면허세			등록의 목적 최대이륙중량			「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항공기	종류·형식	등록기호 ※ HL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제작연월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대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차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취득가액 취득세액 또는 등록면허세																																																																					
등록의 목적 최대이륙중량																																																																					
「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성명·명칭 주소																																																																				
항공기	종류·형식	등록기호 ※ HL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제작연월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대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임차인	성명·명칭 주소·국적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취득가액 취득세액 또는 등록면허세																																																																					
등록의 목적 최대이륙중량																																																																					
「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	수수료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현행		개정안																			
	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에 따라 운항 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u>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u> 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9.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12호서식) 1부 10. 항공기 좌·우 측면 사진 각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 설>		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에 따라 운항 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삭제) 7.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8.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12호서식) 1부 9. 항공기 좌·우 측면 사진 각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u>국외에서 수입되어 등록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의 항공기 말소 또는 무등록을 증명하는 서류</u>																		
등록공무원 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등록공무원 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이전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table><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기간</td><td>7일</td></tr></table> <table><tr><td>신청인</td><td>성명 또는 명칭</td><td>주소</td></tr></table> <table><tr><td>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td><td>[] 매매 [] 임차 [] 상속 [] 기타(년 월 일)</td></tr></tabl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 매매 [] 임차 [] 상속 [] 기타(년 월 일)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항공기 이전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table><tr><td>접수번호</td><td>접수일자</td><td>처리기간</td><td>7일</td></tr></table> <table><tr><td>신청인</td><td>성명 또는 명칭</td><td>주소</td></tr></table> <table><tr><td>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td><td>[] 매매 [] 임차 [] 상속 [] 기타(년 월 일)</td></tr></tabl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 매매 [] 임차 [] 상속 [] 기타(년 월 일)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 매매 [] 임차 [] 상속 [] 기타(년 월 일)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 매매 [] 임차 [] 상속 [] 기타(년 월 일)																				

현행			개정안				
항공기	종류 · 형식	등록기호 HL	항공기	종류 · 형식	등록기호 HL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자	제작번호		
	정치장	제작연월일		정치장	제작연월일		
구분	☐ 구소유자(양도인) ☐ 구임차인 ☐ 구임대인	☐ 신소유자(양수인) ☐ 신임차인 ☐ 신임대인	구분	양도인	양수인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 국적			주소 · 국적				
취득가액		최대이륙중량	등록세액				
「항공안전법」 제14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2조에 따라 항공기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4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2조에 따라 항공기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		수수료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항공기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사본 1부		「항공기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현행		개정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8.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 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8.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9. 임차권 설정등록의 경우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록공무원 확인사항	임차권 설정등록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차권 설정등록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